

폐기물처리업 사망사고 예방대책

현황 및 특성

- 최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기계·설비 점검 및 청소작업 중 끼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
- 폐기물처리업체의 보유 공정·설비와 운전 및 청소·정비작업의 방법은 대체로 동일
 - ➔ 주요 사망사고 사례와 안전한 작업방법 전파를 통해 동종업종의 사망사고를 사전 예방

주요 사고사례

2021. 1. 8(금), 충북 청주

피해 사망 1명

사고 개요 폐기물 처리설비를 가동·점검하는 과정에서 출하 벨트컨베이어가 작동되지 않자 재해자가 이를 점검하던 중 해당 컨베이어가 작동되어 컨베이어와 벨트 누름장치 회전판 축 사이에 끼어 사망



2021. 1. 28(목), 인천 서구

피해 사망 1명, 부상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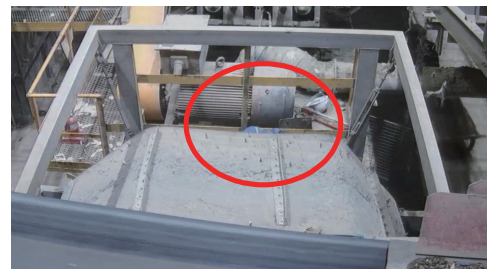
사고 개요 건설폐기물 파쇄작업 종료 후 벨트컨베이어 상부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재해자 2명이 갑자기 작동된 컨베이어 위에 쓰러지면서 컨베이어 끝단 풀리와 컨베이어벨트 사이에 끼어 사망(1명) 및 하부로 추락하여 부상(1명)



2021. 2. 22(월), 인천 서구

피해 사망 1명

사고 개요 건설폐기물 자력선별기에 장착된 회전벨트에 이물질이 끼어 회전벨트가 멈추자 재해자가 회전벨트 내측으로 상체를 밀어 넣고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던 중 설비가 갑자기 가동되어 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어 사망



안전한 작업방법

- ☑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 시 기계·설비의 운전 정지
정비 등의 작업 시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및 작업지휘자 배치
- ☑ 위험상황 시 컨베이어를 차단하는 비상정지장치 설치
비상 시 컨베이어 정지를 위한 비상정지장치를 근로자가 조작할 수 있는 범위에 설치
- ☑ 운전 시작 전 근로자 교육 및 작업방법 등 안전조치 실시
근로자 배치·교육, 작업방법, 방호조치 등을 미리 확인하고 위험방지 조치 실시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제192조(비상정지장치),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 등

안전작업을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안내

사업개요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제조·서비스업)의 안전보건 설비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제조·서비스업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 1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인정유효기간 내)
- 2 고용노동부의 감독·점검 또는 공단·민간위탁기관의 기술지원 사업장 등

지원금액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소요금액의 50% 또는 정액(일부품목 한정)]
 ※ 10인 미만 사업장 및 고위험업종 사업장은 70%까지 지원

지원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우편 및 직접제출 가능) 제출서류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류 일체
 ※ 클린홈페이지(clean.kosha.or.kr)알림마당>서식모음 및 자료실 참조 (☎ 1544-3088)

지원설비(예시)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동력전달부 방호덮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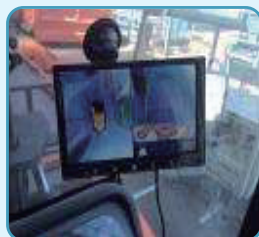
안전난간



잠금·표지 장치 (Lock-Out Tag-Out)



고소작업대



지게차·건설기계 충돌예방 전·후방카메라



지게차·건설기계 센서 및 경보장치



전기설비 접지